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1.1.5. 및 2021.4.20.)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사대금지급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를 정함
(안 제11조의6 신설)

-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나. 소방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선정주체 및 모집공고 등을 정함(안 제12조의9 신설)

-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
-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낙찰자 결정방법,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감리원 응모자격·경력·감리업자 실적 기준시점 등을 포함하여야 함

다.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 훈련 업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20조제4항 개정)

-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에 위탁하고 고시

라.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5 개정)

- 과태료 : 200만원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11조의6(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을 “제11조의5”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6 중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2제2항”을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의7제2항”을 “제12조의7제1항”으로, “때”를 “때(시·도지사가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감리

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9(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대상 및 모집공고) ① 법 제26조의2제2항 후단의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 선정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 감리를 위한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다른 공사의 감리업자 모집공고와 별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도지사에게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다르게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수기간
2. 낙찰자 결정방법
3.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5.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6. 입찰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실거나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 전단 중 “**업무**”를 “업무 및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인정 교육 훈련 업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보에 고시**”를 “**고시**”로 한다.

제20조의2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2항 및 제12조의6, 제12조의8, 제12조의9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지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1일 이후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8 및 제12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부터 적용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00. 0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	60	100	200
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 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2호	60	100	200
다.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3호	200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4호	200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5호	200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	법 제40조제1항제6호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경우 1) 4일 이상 30일 이내에 보수하지 않은 경우 2) 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으로 알린 경우			60		
			100		
			200		
사.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 · 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8호	200			
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8호의2	60	100	200	
자.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9호		200		
차.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0호		200		
카.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40조제1항제10호의3		200		

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 항제11호	60	100	200
파.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 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제1 항제11호의2	200		
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 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제1 항제13호의2	200		
거.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 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법 제40조제1 항제13호의3	200		
너.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 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40조제1 항제14호	60	100	2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법</u> <u>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u> <u>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u> <u>한다.</u> 1.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u> <u>법률</u>」 제5조에 따른 공기업 <u>및 준정부기관</u> 2. 「<u>지방공기업법</u>」 제49조 및 <u>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u> <u>지방공단</u>
<u><신 설></u>	<u>제11조의6(공사대금지급의 보증</u> <u>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u> <u>등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2항</u> <u>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u> 1. <u>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u> <u>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u> 2. <u>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u> <u>기공사</u>
제1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생 략)	제1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
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④ (생략)

제12조의6(설계 및 공사 감리 용
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공고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
관”이란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을 말한다.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
정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말한다.

1. ~ 5. (생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
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② -----

----- 제11조의5 -----
-----.

<삭 제>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6(설계 및 공사 감리 용
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공고
대상자) -----

----- 제12조의2제2항-----
-----.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
정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
1항 후단-----

-----.

1. ~ 5. (현행과 같음)

② -----

“국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고된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신설>

----- 제12조의7제1항-----

----- 때(시·도지사가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9(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대상 및 모집공고) ① 법 제26조의2제2항 후단의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 선정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 감리를 위한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다른 공사의 감리업자 모집공고와 별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도지사
에게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다
르게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접수기간

2. 낙찰자 결정방법

3.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
(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5.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
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6. 입찰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
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실거나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 ③ (생략) ④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u>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u> 이 경우 소방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u>관보에 고시</u>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2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u>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u>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업무 및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인정 교육 훈련 업무</u>----. ----- ----- <u>고시</u>----- -----.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 -----
---	--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5.·6. (생략)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u> <u>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u> <u>훈련에 관한 사무</u> 5.·6. (현행과 같음)
---	--